

■ 목 차

■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소식 ■

'미얀마, 태국 투자 법제 세미나' 개최.....1

■ 해외업무 사례 ■

국내 최초로 '자원트레이딩 펀드' 운용 설정 관련 자문.....3
부동산 투자 회사 설립 자문.....4
브라질 현지 의료기기 업체 자문.....5
일본 기업을 대리하여 국내 영업 고문 계약 자문.....6
일본 기업을 대리하여 국내 엔터테인먼트 투자 계약 자문.....6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러시아 대표사무소 설립 자문.....7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러시아 현지법인의 정기사원총회 및 정관 개정 자문.....7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러시아 부동산 PF 만기 대출 연장 자문.....8

■ 해외업무 논단 ■

반독점민사사건 관련 사법해석 제정 - 개인의 소제기 더 용이하게.....9
국내법인 지분 인수 제도 개정 예정.....11
태국의 공공분야 국영기업에 대한 건설 엔지니어링 등 사업 진출 시 법적 형태.....13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공개.....15
브라질 외국인 투자 가이드(4) - 토지 취득 시 유의사항.....18
日 개정 저작권법 국회 통과.....20
러시아 유한책임회사 지분양수도 절차 및 유의사항.....22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사모채권 발행 개시 외 2.....	27
베트남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29
광산업 인허가 및 고무재배사업을 위한 토지 양여권 발급 중단 외 1.....	31
미얀마 은행 개방의 물결.....	32
브라질 게임시장 2014년까지 2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외 1.....	34
일본의 농산물 미얀마에서 재배 G-7홀딩스 외 6.....	35
러시아연방 지하자원법 개정으로 지하자원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외 4.....	38

■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

[제859호 - 브라질 월드컵·올림픽 인프라 구축 위한 조치.....	40
[제860호 - 일본] 6중고에 시달려 온 일본 기업, 첨단산업 중심으로 한국 진출 증가.....	41
[제861호 - 러시아] 일자리 2500만 개 창출...실현은 '글썸'.....	42
[제862호 - 호주] 대형 자원 기업 이익의 30% 세금 부과.....	43
[제863호 - 캄보디아] 금융 위기로 좌초...투자 환경은 유리.....	44
[제864호 - 라오스] 증권거래법 제정 등 활성화 피해.....	45

■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소식 ■

'미얀마, 태국 투자 법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 7월 3일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18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미얀마, 태국 투자 법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1부에서 지평지성의 정철 변호사가 '미얀마 투자 법제 개관'을, 유정훈 변호사가 '미얀마 진출시 유의점과 효율적 방안'을 발표하고, 제2부에서 정재형 변호사가 '태국 투자 법제 개관'에 이어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과 태국의 지역운영본부(ROH) 설립 및 유망 투자 분야'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아시아의 마지막 황금시장인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고, 태국 또한 성장가능성과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따른 전략적 역할에 주목하여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와 태국의 투자 법제와 시장 환경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한국 로펌으로서는 유일하게 미얀마와 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지평지성이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행사 사진]



인사말을 하고 있는 양영태 대표변호사(좌)와 발제를 하고 있는 정철 변호사(우)



세미나 전경

■ 해외업무 사례 - 인도네시아 ■

국내 최초로 '자원트레이딩 펀드' 운용 설정 관련 자문

지평지성이 '자원트레이딩 펀드' 운용 설정과 관련하여 지난 1년여 간 하나대투증권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자원트레이딩 펀드'는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것으로 펀드의 연간 총 운용 규모는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기사]

- 해외 유연탄 직거래... '자원트레이딩 펀드' 첫선 - 한국경제(2012. 7. 3.)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유정한 변호사



임주영 호주변호사



홍진경 미국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태국 ■

부동산 투자 회사 설립 자문

지평지성이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외국인 토지 소유와 관련된 회사법, 계약법 차원의 법적 구조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재형 변호사
태국 사무소장

■ 해외업무 사례 - 브라질 ■

브라질 현지 의료기기 업체 자문

지평지성이 국내 의료기기 업체를 대리하여 브라질 현지 의료기기 업체의 지분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거래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정철 변호사



이상희 미국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일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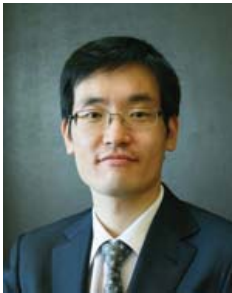
일본 기업을 대리하여 국내 영업 고문 계약 자문

지평지성이 일본 기업을 대리하여 한국 국내에서의 영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고문 계약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강성 대표변호사



이병주 변호사

일본 기업을 대리하여 국내 엔터테인먼트 투자 계약 자문

지평지성이 일본 기업을 대리하여 한국 엔터테인먼트 투자 계약에 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승수 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러시아·중앙아시아 ■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러시아 대표사무소 설립 자문

지평지성이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러시아 대표사무소 설립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명한석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러시아 현지법인의 정기사원총회 및 정관 개정 자문

지평지성이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러시아 현지법인의 정기사원총회와 정관 개정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러시아 부동산 PF 만기 대출 연장 자문

지평지성이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러시아 부동산의 PF 만기 대출 연장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윤재민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

반독점민사사건 관련 사법해석 제정 - 개인의 소제기 더 용이하게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옥림 중국변호사)

지난 5월 3일에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반독점법 시행 후 처음으로 독점행위로 발생한 민사사건의 심리와 관련한 사법해석(이하 '반독점민사사건 사법해석')을 발표하였는 바 이 사법해석은 이미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08년 8월부터 반독점법을 시행한 이래 2011년 연말까지 3년 간 전국적으로 인민법원에 수리된 반독점민사사건은 1심을 기준으로 61건이었으며, 그 중 53건은 이미 종결되었지만 원고가 승소한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반독점민사사건 사법해석'의 시행으로 소제기율, 원고의 승소율 등 면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바, 대형기업 및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반독점민사사건 사법해석'은 크게 '소제기, 사건 수리, 관할, 증거책임의 배분, 소송증거와 민사책임' 관련 내용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우선 소제기 절차와 관련하여 반독점부서의 반독점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필수 선행절차로 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소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제기 주체에 대하여서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체' 모두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개인도 직접 소제기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반독점민사사건의 법원 심급 관할과 관련하여서는 반독점사건의 전문성과 난이도 및 사건의 파급력이 큰 점을 감안하여 1심 관할 법원을 성도 소재지의 중급 인민법원 위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 지역 관할은 사건에 따라 불법행위, 계약 분쟁 사건의 관할 원칙을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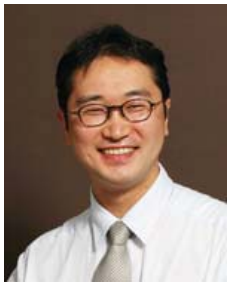
이 외 원고의 입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독점민사사건 사법해석'에서는 입증책임의 배분, 증명책임을 면제하는 사실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입증책임의 배분과 관련하여 경쟁관계의 경영자 간에 상품가격의 고정 또는 변경 등 담합을 한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이러한 담합행위가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원고는 피고가 대외적으로 발표한 정보를 시장지배지위 보유를 증명하는 증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피고가 대외적으로 발표한 정보로 그가 관련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직접 피고의 지배적 지위 보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독점민사사건 사법해석'의 발표는 중국 언론에서는 이 사법해석으로 '개인도 반독점 소제기 가능해졌다'는 점을 대거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반독점민사사건 사법해석' 제정 전에도 개인의 반독점 소제기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으며 이미 제기된 반독점 소송에서도 개인이 독점기업을 상대로 소제기한 경우는 이미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법해석의 시행으로 개인의 소제기 자격이 한층 분명해졌으며, 개인이 독점기업을 상대로 소제기함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완화 등 조치로 다른 소제기 주체와 비교할 때 제일 약자인 개인의 소제기도 현실적으로 용이해졌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도 반독점 소제기가 가능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 해외업무 논단 - 베트남 ■

국내법인 지분 인수 제도 개정 예정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정태 변호사 ·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베트남은 순수 국내법인과 외국인 투자법인의 법인 설립 증명 서류가 서로 상이합니다. 한국의 경우 순수 국내법인과 외국인 투자법인 모두 법인등기부가 법인 설립 증명 서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순수 국내법인은 사업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이, 외국인 투자법인은 투자허가서(Investment Certificate)가 그 역할을 합니다. 본래 기업법(Law on Enterprises)에서 정하고 있는 설립 증명 서류는 사업등록증인데, 투자법(Law on Investment)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투자허가서로서 사업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외국인 투자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투자허가서를 신규 발급받거나 기존 투자허가서를 변경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순수 국내법인의 지분을 외국인이 인수(신주 인수 또는 구주 양수)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설립 증명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가 법령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법인 설립을 관할하는 지방(Province) 정부 부서마다 그 처리 방법을 달리 권고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혼동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등 대다수 업종의 경우 각 지방정부의 투자기획국(Department of Investment and Planning)이 관할하고 있고, 투자기획국 내부에는 순수 국내법인을 다루는 국내부(Domestic Division)과 외국인 투자법인을 다루는 외국투자부(Foreign Division)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순수 국내법인의 지분을 외국인이 인수하게 되면 회사의 성격이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전환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체로 국내부는 기존에 발급되어 있는 사업등록증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외국투자부는 신규 투자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호치민시

에 설립된 순수 국내법인의 지분을 외국인이 인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 가지 절차, 즉 기존 사업등록증의 변경 및 신규 투자허가서의 발급을 모두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혼동스러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베트남 정부는 2006년 9월 22일자 투자법 시행령(Decree 108)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순수 국내법인의 지분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규 투자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투자허가서 발급 신청서
- 지분 인수 계약서
- 현행 정관 및 정관 개정안
- 기존 사업등록증 사본
- 피인수회사의 내부 절차(이사회 또는 사원총회/주주총회) 이행 결의서

입법예고된 원안대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순수 국내법인이 기존에 발급받았던 사업등록증을 변경하는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고, 신규 투자허가서 발급 절차만 거치면 되므로 절차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해외업무 논단 - 태국 ■

태국의 공공분야, 국영기업에 대한 건설, 엔지니어링 등 사업 진출 시 법적 형태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재형 변호사 · 태국 사무소장)

태국의 외국인사업법(FBA) 상 건설업, 엔지니어링 등은 별표3에 해당하여 외국인이 과반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사업허가(FBL)를 별도로 얻으면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나 실제 FBL을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약이 있을 경우 현지법인이 아닌 지사 형태로 진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합작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태국인의 명의를 빌려 51%의 주식을 소유하도록 합니다. 후자의 경우 명의 차용에 대한 제반 법적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러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여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익 사업이나 통신설비에 관한 기본적 공공 서비스 설비의 건설을 위한 경우로 특별한 장비나 기술,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자본금을 5억 바트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100% 외국인 투자, 즉 한국 기업이 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태국의 민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는 3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통상 투자기업이 100%-2주를 소유하고 나머지 2주를 계열사, 지사장 또는 직원이 소유하도록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태국의 상무부는 태국의 공공 분야, 국영기업, 공공 분야 또는 국영기업과 계약한 사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엔지니어링, 건설, 턴키 프로젝트, 자문, 교육, 장비나 기계의 조달, 설치, 시험테스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을 제정하여 FBL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그에 따라 이 경우는 FBL을 얻은 다음에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FBL을 얻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공공 분야, 국영 기업으로부터 수주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를 위한 자금으로 3백만 바트 이상을 송금하여야 하고 운영 및 회계 관련 자료를 추후 상무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공 분야, 국영 기업과 계약을 한 사기업으로부터 수주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로 차입금이 태국으로 송금한 자금의 7배를 초과할 수 없고 최소 1명의 직원이 태국에 주거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의 태국 진출에는 아직 법적 제한이 있지만, 태국의 공공 부분이나 공기업으로부터 수주를 하는 한국 기업은 FBA상의 제약에 대한 예외가 되는 이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외업무 논단 - 미얀마 ■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공개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철 변호사)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은 2011년 말부터 법개정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6월 떼인세인 대통령은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을 7월 정기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의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6월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었는데, 미얀마 현 정부의 시장 개방 의지에 비추어 조만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의 주요한 의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의 투자회사관리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의 정부 고시(Notification) 형태로 규율하고 있던 내용(예를 들어 Notification 39, 40/2011)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의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먼저 외국인 투자의 형태로 기존의 외국인 100% 단독 또는 35%이상 합작투자의 형태를 외국인 투자로 인정하던 것에서 '상호합의된 계약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외국인과 미얀마 정부의 투자계약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외국인투자자로 인정하여 투자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투자 금액의 적용환율에 대하여 투자위원회(MIC)의 평가규정을 삭제하고 은행에서 수용가능한 외화로 등록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미얀마 정부가 2012년 4월 변동환율을 도입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시장환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기존의 3년간 적용되던 법인세 면제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투자기간 중 사업 확대를 위해 수입하는 기계장비류 등을 수입하는 경우 투자규모 확대에 대한 투자위원회의 승인 이

후 관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상업세를 감면하고, 수출을 위한 원자재 수입에도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산업, 농업, 축산 부분의 투자를 위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최초 30년까지 임대를 허용하였고, 그 이후 임대기간은 15년씩 2회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정부 토지만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나 민간소유의 토지도 임대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낙후 지역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경우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은 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는 미얀마 국내법에 따라 미얀마 내국인(내국법인)에게 주식 및 사업을 양도할 수 있고, 투자위원회의 사전 승인 시 미얀마 내국인에만 허용되는 업종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업연장, 투자금 증가를 위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기타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서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혜택의 적용을 위해 투자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가 자산을 처분, 교환, 양도하는 경우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금액은 관련 수익의 50%로 제한하고, 투자위원회의 사전 승인 시 기존의 영업허가증을 반납한 후 주식 전부를 다른 외국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는 미얀마의 법률을 준수하고,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해야 하고, 부동산의 재임대·담보 및 주식 또는 사업의 양도 시 투자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에게 토지를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자원을 발견하는 경우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에는 고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회사가 비숙련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미얀마 현지인만을 고용할 수 있고, 숙련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설립 후 5년까지는 해당 업무 인원의 25%, 10년까지는 50%, 15년까지는 75%를 미얀마 현지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회사가 현지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국영 노동사무소 또는 지방 노동청을 통해서 채용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에는 분쟁해결의 절차에 대해서 신설하였는데, 이 부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가 자신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 먼저 당사자들이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사자들 간의 계약에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 당해 분쟁해결 조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 분쟁해결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미얀마의 현행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투자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간의 합의된 분쟁해결 방식을 최우선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해외업무 논단 - 브라질 ■

브라질 외국인 투자 가이드(4) - 토지 취득 시 유의사항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철 변호사)

1. 외국개인 및 외국법인의 토지 취득 시 제한 사항 확인

브라질법은 토지의 구성단위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별하고, 농촌 지역의 토지취득(매수와 임차를 모두 포함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법률 제5709.71호).

외국인(개인)의 경우, 1인의 외국인이 매입면적과 임대면적을 합하여 취득할 수 있는 농촌 지역의 면적은 개별 시마다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5,000 ha 정도의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외국법인이 취득할 수 있는 농촌 지역의 면적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법인 및 개인에 대해 공통적으로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농촌 지역의 총 취득면적은 당해 시 면적의 25% 이며, 동일 국적의 외국인들에게 허용되는 총 면적은 당해 시 면적의 10%입니다. 위 제한은 외국인이 대주주인 브라질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소유 관계 및 조세체납 여부 확인

현지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통상의 토지취득 절차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보다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등기부를 확인하여 매도인이 소유자인지, 고지받지 않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와 관련한 조세가 체납되어 있는지 또는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토지에 대한 세금 체납은 국세청 사이트를 통

해 확인이 가능하고, 소유자에 대한 세금 체납은 관할 주, 시 세무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관련된 소송이 있는지는 연방, 주 법원 사이트에서 소송 유무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편, 브라질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우리 법률과 마찬가지로 등기경료를 요건으로 하므로 토지 매입 후에는 반드시 등기를 경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임대물 매각시 새로운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임대차계약에 명시하고 부동산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3. 기타 확인 사항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 납부해야 할 조세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과세권은 시 정부가 가지며, 부동산 취득세는 시 정부의 세율에 따릅니다. 상파울루 시의 경우에는 ITBI 세율은 2%입니다(상파울루 시 법률 제51,627.10호). 다만,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법인에게 이전되는 부동산의 경우 ITBI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법률 제10,257호). 추가로, 연방 정부 관할인 농촌 지역 부동산 소유세(Imposto sobre a Propriedade Territorial Rural-ITR)도 고려해야 하는데, ITR의 경우 토지 면적과 사용도에 따라 0.03%~20%가 부과됩니다.

한편, 투자를 유치하는 주 정부나 시 정부가 투자 규모에 따라 토지를 무상 지원하거나 무상 장기 임대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해외업무 논단 - 일본 ■

日 개정 저작권법 국회 통과



(법무법인 지평지성 강성 대표변호사)

인터넷의 급격한 보급으로 인해 인터넷과 관련된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 온 것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파일 공유 문제는 저작권과 인터넷 사용자 간에 상반된 입장이 두드러집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 대학생이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창작물과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3년 전부터 있어 왔는데, 드디어 이번 6월 20일에 일본 국회에서 개정 저작권법이 통과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골자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째는 불법 다운로드의 벌칙화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불법으로 업로드 된 음악 및 동영상 등을 다운로드 했을 경우, 아무런 벌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법 업로드 된 파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운로드 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2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죄를 묻지 않는 친고죄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판 공정 사용(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기준과 범위 내의 이용)의 도입입니다. 예를 들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시 배경 등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촬영된 경우, 이를 블로그 등에 게재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녹음과 녹화 등의 기술개발과 실험을 위하여 영화나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영리 목적일지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으며, 국립국회도서관이 소장한 절판 자료의 경우 그 디지털 데이터를 타 도서관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한 권 전부가 아니라면 일부 내용을 복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접속 제어의 보호입니다. 암호를 이용한 접속 제어 기술이 적용된 판매용 DVD나 게임 소프트웨어를 리핑(CD나 DVD 파일을 PC 하드디스크로 복사하는 작업) 등의 복제 행위를 사적 복제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금지합니다. 또한 DVD 리핑 소프트웨어의 판매와 복제기기 등의 판매도 금지됩니다.

불법 다운로드의 벌칙 부과와 접속 제어의 보호는 이번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일본판 공정 사용에 관한 조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유튜브'와 같은 스트리밍 방송은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에서 획기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연구 목적을 위한 예외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향후 저작권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연구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해외업무 논단 - 러시아·중앙아시아 ■

러시아 유한책임회사 지분양수도 절차 및 유의사항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러시아에서 영리기업 형태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이하 '유한회사')입니다. 러시아연방 국세청 자료(2012년 7월 1일 기준)에 따르면 러시아에 등록된 총 기업의 수는 4,560,416개이고, 이 중 유한회사는 3,600,484개(78.95%)입니다. 반면 주식회사는 177,568개로 전체 회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9% 수준입니다. 통계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유한회사는 러시아 기업형태의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유한회사는 소수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결속력이 강하고, 사원총회와 업무집행기구만 설치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이사회나 감사 등은 임의로 선택 가능하도록 하여 경영상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높고, 주식회사와는 달리 회사 운영에 대해 공시 의무가 면제되는 등 외부 감독기관의 간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현재 러시아 유한회사 규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법령은 러시아연방 민법(1부)(No. 51-FZ, 1994년 11월 30일 제정, 2012년 6월 27일 최근 개정) 및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법률(No. 14-FZ, 1998년 2월 8일 제정, 2011년 12월 6일 최근 개정) (이하 '유한회사법')이며, 유한회사법에서는 지분양수도 절차, 요건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유한회사 지분양수도, 특히 제3자에 대한 지분양수도와 관련된 절차 및 주요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분인수 주체

유한회사의 사원은 자신의 지분을 회사 내 다른 사원(1인) 또는 다수의 사원에게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 정관으로 제3자에 대한 지분매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지분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지분 매각 시 다른 사원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회사의 정관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사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다른 사

원 또는 회사의 매각 동의는 원칙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정관으로 다른 사원 또는 회사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에 대한 지분 양도 시 우선매수권

기본적으로 유한회사는 인적 결속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이므로, 사원의 변경은 사업의 성공 또는 실패와 즉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법은 특정 사원이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른 모든 사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정관으로 회사에게도 이러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건을 위반하여 지분이 양도되어 사원 및/또는 회사의 우선매수권이 침해된 경우, 사원 및/또는 회사는 이러한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에 우선매수권 행사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가) 우선매수권 행사 가격

유한회사법에서는 우선매수권 행사 가격을 2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사원들끼리 회사 정관으로 우선매수권 행사 가격을 정한 경우, 회사 정관에서 사전에 정한 가격(이하 '사전 가격')과 지분을 매각하는 사원이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하는 가격(이하 '제3자 가격')입니다. 회사 정관으로 사전가격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 가격이 우선매수권행사의 기준 금액이 됩니다.

사전가격은 정관으로 확정금액 내지 기타 기준(회사 순자산금액, 최종회계연도 장부상 자산금액, 회사 순이익 등)을 기초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가격은 모든 사원 간 차등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나) 지분매각 비율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사전 가격은 모든 사원간 차등을 둘 수 없으나, 회사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지분을 매각하는 사원은 각 사원의 지분율이 아닌 다른 지분율에 따라 지분매각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정관에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각 사원은 자신의 지분을 해당하는 만큼 지분을 인수합니다.

다) 제한

회사 정관은 사전가격 또는 제3자가격으로 우선매수권 중 한가지 가격 산정방법으로만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둘 수 있고, 사전가격과 제3자가격을 동시에 정관상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특정 사원 또는 특정 지분에 대해서만 사전가격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선매수권의 양도도 금지 됩니다.

3. 지분양도 절차

가) 통지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사원은 서면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회사를 통하여 다른 사원 및 회사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안서에는 지분 매각가격 및 기타 매각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제안서를 수령한 시점에 모든 사원들이 제안서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나) 행사 기간

일차적으로 사원들은 회사가 제안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정관으로 유한회사법에서 정한 30일 보다 길게 행사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관으로 회사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경우, 이러한 정관에는 사원과 회사의 우선매수권 행사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우선매수권 행사 기간은 사원 및 회사의 우선매수권행사 포기 서면신청서 제출일 또는 우선매수권행사기간(30일 또는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종료됩니다.

다) 우선매수권 포기

사원의 우선매수권행사 포기 신청서는 우선매수권행사 기간 내 회사로 제출되어야 하며, 회사의 우선매수권행사 포기 신청서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사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우선매수권 포기 신청서는 당사자 서명공증을 받아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단순 서면 신청서는 우선매수권 행사 포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잔여지분 양도

우선매수권 행사기간 동안 사원 및 회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일부만 행사한 경우, 잔여지분은 제3자에게 매각됩니다.

마) 계약공증 확인

제3자와의 지분양수도 거래는 공증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공증확인을 거치지 않은 지분양수도 계약은 요건 위반으로 이러한 거래는 무효입니다. 다만, 유한회사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증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지분에 대한 소유권은 지분양수도 계약에 대한 공증확인 시점에 이전됩니다. 다만, 유한회사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공증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통합국가법인등기부에 해당 변경사항이 기재된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종적으로 공증인은 지분양수도 계약에 지분양수도 거래 확인필증을 날인합니다.

바) 통합국가법인등기부 변경 등록 신청

지분양수도 계약 공증 확인 후 해당 공증인은 해당 공증일로부터 3일 이내 양도인이 서명한 통합국가법인등기부 변경 신청서를 관할 등록기관(지역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해당 공증인은 관할 등록기관에 대한 신청서 송부뿐만 아니라 해당 신청서 사본을 양도인의 회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 공증일로부터 3일 이내 송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는 경우, 둘 중에 어느 한 당사자가 회사에 지분양수도 거래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공증인은 이러한 통지의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한회사의 지분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원은 지분을 처분할 때 일정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야만 합법적으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분을 매각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사원들 및/또는 회사의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으로 인해 처분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입장에서는 지분 매각으로 사업 안정성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분인수와 관련하여 예기치 않은 자금조달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투자자/파트너들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유한회사법상의 규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중국 사모채권 발행 개시

지난 5월 22일, 중국 상해거래소와 심천거래소는 「중소기업 사모채권 업무 시범방법」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은 중국 내에서 비공개 방식으로 사모채권을 발행 및 양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 방법에서 가리키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형태 기준규정에 대한 통지」의 기준에 부합되는, 상해 및 심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기업과 금융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합니다.

동 방법에 따라 발행하는 사모채권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발행인은 중국 내에 등록된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이어야 하고, (2) 발행 이자율이 동기 은행 대출기준 이자율의 3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3) 기한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에서는 사모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의 순자산과 영업능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투자는 리스크가 비교적 크므로 투자자는 발행인이 공개한 정보를 근거로 자체적으로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해야 합니다.

1년 이상 토지를 방치할 경우 토지가격의 20%에 해당하는 토지방치 비용 징수

지난 6월 7일, 국토자원부서에서 「토지방치에 대한 처리방법」(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동 방법에 따르면, 국유건설용지 유상 사용계약에서 약정한 착공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도록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 시·현급 국토자원부서는 토지가격의 20%에 해당하는 방치비용을 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만 2년이 경과하도록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 시·현급 국토자원부서는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국유건설용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착공하였다더라도 개발 면적이 반드시 개발하여야 하는 면적의 1/3에 미달하거나 기 투자한 금액이 총 투자액의 25%에 미달

한 상태에서 1년 이상 개발을 중단하였을 경우 이 역시 토지를 방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여직원에 대한 노동보호 강화

지난 4월 8일, 국무원에서는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 시행되던 「여직원 노동보호규정」은 1988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일부 내용은 이미 현실에 부합되지 못하였습니다. 기존의 규정과 비교할 때 이번에 제정된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은 주로 아래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1) 여직원이 종사할 수 없는 노동범위를 부록의 형식으로 조정하였고, (2) 출산휴가기간과 대우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3) 감독관리 및 법률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예컨대, 기존의 규정에 따르면 출산휴가기간은 90일이지만 신규 규정에 의하면 14주, 즉 98일로 연장하였고, 유산하였을 경우 기존의 규정에는 단지 일정한 기간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였지만 신규 규정에서는 임신 4개월 미만 이내에 유산하였을 경우 15일, 임신 만 4개월 후 유산하였을 경우 42일 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최신 해외정보 - 베트남 ■

베트남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베트남 상무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Vu Huy Hoang 장관과 유럽연합(EU) 무역부 Karel De Gucht 장관은 지난 6월 26일 유로연합의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 베트남과 유럽연합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을 개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베트남-EU FTA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은 물론 각종 무역 협약과 정책규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는 지난 2010년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와 FTA 협상을 시작하여 올해 안에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할 것으로 전망되며,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다른 ASEAN 국가와도 개별적으로 FTA 협상을 추진하고 나아가 2015년에는 EU 대 ASEAN의 FTA 협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베트남에게 EU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고, EU에게 베트남은 10개 ASEAN 회원국 가운데 다섯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입니다. 2011년 베트남이 EU로 수출한 금액은 128억 유로이고, 베트남이 EU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52억 유로이며, EU가 베트남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18억 달러로 대 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금액(FDI)의 12%를 차지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생산한 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베트남과 EU간의 FTA 진행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 기사]

- [EU, 베트남과 FTA 협상 시작 내주 공식발표 - 연합뉴스\(2012. 6. 19.\)](#)

- 베트남 • EU, FTA 체결 위한 협상 나서 – 아시아투데이(2012. 4. 5.)
- 베트남-EU, FTA 협상 개시 – 아주경제(2012. 4. 5.)
- EU and Vietnam launch negotiations for a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 Eropa(2012. 6. 26.)

■ 최신 해외정보 - 라오스 ■

광산업 인허가 및 고무재배사업을 위한 토지 양여권 발급 중단

라오스정부는 광산개발사업과 고무재배사업으로 인한 환경·사회적 영향을 우려하여, 2015년까지 광산업 인허가와 고무재배사업을 위한 토지 양여권 발급을 임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산업의 경우 수력발전사업 및 농업과 더불어 라오스정부가 외국인투자자를 유치하던 주요 사업부문이라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금번 정책은 라오스 경제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라오스 경제협력 강화 기대

라오스 총리 통싱 탐마봉(Thongsing Thammavong)은 최근 한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라오스의 경제개발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한-라오스 양국 관계는 1995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바,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베트남, 중국 및 태국에 이어 라오스의 4대 투자국가로 상승하였습니다. 금번 라오스정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라오스 조세정보시스템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차관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최신 해외정보 - 미얀마 ■

미얀마 은행 개방의 물결

최근 미얀마 중앙은행은 11개의 미얀마 민간은행에 3종류의 외환(USD, Euro, Singapore dollar)을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은행들은 Kanbawza Bank, Cooperative Bank, Myanmar Industrial Development Bank, Myawaddy Bank, Inwa Bank, Myanmar Oriental Bank, Asian Green Development Bank, Ayeyawaddy Bank, Myanmar Pioneer Bank, United Amara Bank and Tun Foundation Bank입니다. 이로써 이 민간은행들은 외환 은행업무(foreign currency banking services)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무역과 투자와 관련한 거래를 다루는 국제적인 은행들과 연결되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들 은행들은 계좌의 개설, 수표의 지급 및 회수, 송금 및 자금 이체에 관한 사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T/T 송금(Telegraphic Transfer) 및 신용장(Letter of Credit) 발행은 정부 은행인 MICB, MFTB에서만 가능하였으나, 향후 민간은행에서도 이들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송금관련 업무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2년 5월 미얀마 중앙은행은 2014년부터 외국계은행들이 미얀마 기업과의 합작투자의 형태로 미얀마 진출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고, 현재 다수의 외국계은행들이 미얀마 진출을 위해 투자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는 외국계 은행들의 미얀마 직접진출도 허용하는 단계적 금융시장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화통신에 의하면 현재 미얀마에는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중국, 프랑스, 일본,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태국, 캄보디아, 브루나이, 베트남, 미국과 영국계 은행의 대표사무소가 있으나, 은행영업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편, 한국의 경우 KDB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본격적인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해 미얀마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6월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르면 올해 안이나 내년 초에 미얀마 최대상업도시 양곤에 주재원을 파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조만간 실무자들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를 돌아보며 시장을 파악하고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주재원을 파견할 예정이고 가장 유력한 곳이 미얀마”라고 밝혔습니다(2012년 6월 29일자 아시아투데이).

기업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미얀마에 내년 상반기 사무소를 열고 그 이후에 현지 은행과의 합자은행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얀마의 개방 속도는 중국과 베트남보다 더 빠를 것으로 예상돼 서둘러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미얀마 진출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2012년 7월 1일자 파이낸셜뉴스).

미얀마 시장의 개방과 다수 한국기업들의 미얀마 진출에 따라 우리 은행들의 미얀마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신 해외정보 - 브라질 ■

브라질 게임시장, 2014년까지 2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시장조사기관 슈퍼데이터(SuperData)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브라질 소셜게임 시장의 규모는 1억 3천6백만 헤알(약 1천6백3억 원) 정도이고, 게임인구는 5천만 명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중남미 소셜게임 중 35%의 매출 규모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세계 시장 5위에 랭크되기에 이릅니다. 브라질 소셜게임 산업이 떠오르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대대로 남성 유저 중심으로 게임시장이 발달해 온 브라질의 과거 모습과는 달리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비롯한 비게임 사용자들이 SNS를 통해 소셜게임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 상황에 기인합니다. 나아가 모바일기기 등 새로운 플랫폼이 대중화되었다는 점도 또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페이스북을 비롯해 현지 SNS 업체들이 유료 게임아이템과 보너스 게임 제공, 광고 게재 등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소셜게임 시장규모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라질,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의 비약적 증가 예상

브라질 정부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인 PNBL의 목표 달성 년도를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진 2014년 말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우마 정부 초기 브라질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27%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40%로 상승하였고, 당초 예상대로 계획이 실천될 경우, PNBL이 종료되는 2014년에는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70%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요구에 따라 통신부(Anatel)는 2016년까지 계획된 통신분야 투자액을 1,045억 헤알에서 1,394억 헤알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통신부와 함께 통신업체들의 저항으로 지난 수년간 실현되지 못했던 통신 인프라 망 공유 문제의 해결책으로 통신 인프라 망 공유 관련 법령을 승인하였고, 이번 달 말부터 동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일본 ■

일본의 농산물, 미얀마에서 재배, G-7홀딩스

G-7홀딩스는 올 10월, 미얀마의 유통 대기업인 시티 마트 홀딩스(양곤시)와 일본의 농산물을 재배 및 판매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합니다. 12일에 업무제휴계약을 맺었습니다. 잎 야채와 근채 등 일본의 청과물을 미얀마에서 재배하여 내년 봄에 시티 마트사의 식품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향후 합작회사를 통하여 축산물 분야 사업 전개도 검토할 방침이며 일본 레스토랑 등의 미얀마 진출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니스톱, 미얀마 진출 연내에 1호점

미니스톱은 미얀마에 진출할 방침을 굳혔습니다. 현지 소매 대기업인 시티마트 홀딩스와 제휴 협상을 추진하여 연내 진출할 생각입니다. 시티마트와 사업전개를 위한 양해각서를 맺고 시장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호점은 연내에 양곤 등 대도시에서 오픈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화 진전과 함께 소비 시장의 성장이 기대할 수 있는 미얀마에는 100엔숍인 오쿠라(大倉) 산업이 3월 중순에 진출하였습니다. 로손도 3개사 정도의 현지 기업과 제휴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미얀마 대형 은행 지원, 개방을 고려한 제휴도 검토

미쓰이 스미토모(三井住友)은행은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미얀마의 민간 최대 은행의 지원에 나섭니다. 일본 은행으로는 처음으로 현지 칸보저 은행과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투융자 리스크 관리 등 은행 경영 전반을 조언함과 동시에 금융 인재 육성을 지원합니다. 향후 업무 제휴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미얀마에서는 작년 3월에 발족한 문민 정권이 민주화, 경제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금융기관도 일본 기업의 진출을 염두에 두고 현지 체제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은 현지 직원으로 대응해 온 양곤 주재원 사무소에 2011년 4월부터 일본인 소장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올 4월에는 미쓰비시도쿄(三菱東京) UFJ은행도 지금까지 주변국과 겸무시켜온 양곤 주재원 사무소의 소장을 전속으로 변경시켰으며, 미즈호 Corporate 은행도 양곤에 주재원 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은행 이외에도 다이와(大和)증권 그룹과 도쿄증권거래소가 미얀마 중앙은행과 미얀마 최초의 증권거래소 개설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미얀마의 전력부족, 일본에는 절호의 상업 기회, 화력발전 증강으로

미얀마의 전력부족은 미얀마 진출을 노리고 있는 외자 기업에는 불안 요소가 되고 있지만, 일본에는 절호의 상업적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주변 환경과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이유로, 테인 세인 대통령이 이라와지강 상류에 중국과 공동으로 건설 중이었던 수력 발전 댐의 공사를 동결시키기로 표명하였습니다. 이를 대신하여 부상한 것이 화력발전소의 증강입니다. 전력 공급 개선을 서두르고 있는 미얀마 정부는 일본의 J파워 등과의 공동사업 이외에도 개발 프로젝트를 차례로 시작할 공산이 큼니다.

도시바, 한국풍력발전기 제조사 '유니슨'의 최대주주로

도시바(東芝)는 29일,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한국의 풍력발전기 제조사인 유니슨의 최대주주가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작년 취득한 유니슨의 신주예약권부 사채(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제삼자 할당증자를 인수하여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6월 중으로 모든 거래를 마쳐 출자 비율을 34%로 할 방침입니다. 도시바의 유니슨에 대한 출자 총액은 CB 취득분을 포함하여 약 62억 엔에 달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풍차를 공동 개발하고 자사의 판매망을 이용하여 유니슨 제품을 판매하는 등 제휴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NTT, 태양광 발전에 진출, 메가솔라(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3년간 20개소로

NTT가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진출합니다. 그룹 소유 유휴지 등을 이용하여 2014년도까지 메가솔라를 약 20개 곳에 가동시킬 계획으로, 총 투자액은 약 150억 엔으로 예상됩니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전력회사가 전량 매입하는 제도가 7월에 시작되어, 이업종 대기업들의 진출도 이어지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세라는 IHI 등과 함께 약 250억 엔을 들여 가고시마(鹿兒島)에 발전 능력 7만kwht급 메가솔라를 7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소프트뱅크도 10개 곳 이상에 메가솔라를 건설하겠다고 표명하였습니다.

코나카, 미얀마에서 양복 생산 1.5배로 출점도 검토

신사복 체인점인 코나카(コナカ)는 미얀마에서 양복을 증산합니다. 연내에 생산을 위탁하는 협력 공장을 4곳에서 5곳으로 늘려, 연간 생산량을 현재의 1.5배인 15만 벌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시장 확대를 고려하여 미얀마에 신사복점 오픈도 검토 중입니다.

아오야마(青山)상사도 이미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 양복 생산 거점을 확대하였습니다. 미얀마로부터도 연간 약 30만 벌을 일본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인복 브랜드인 하니즈가 4월 양곤 교외에 부인복 자사 공장을 가동시켰으며, 캐주얼 의류인 유니클로(퍼스트 리테일링)도 미얀마에서의 생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신 해외정보 - 러시아·중앙아시아 ■

러시아연방 지하자원법 개정으로 지하자원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2012년 6월 14일 러시아연방 정부는 지하자원법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 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지하자원법을 일부 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처벌 당사자는 손해를 치유하고 손해배상을 아울러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지하자원법은 2013년 1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러시아연방 반독점청, 러시아 전략적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인수 시 신고 30일 내에 심사 마치기로

2012년 5월 25일 러시아연방반독점청은 러시아 전략적 기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자가 5% 이상 해당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제출하는 신고서에 대해 제출일로부터 30일 내 심사를 완료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고시하였습니다.

러시아연방경제개발부 정부민간파트너십에 관한 연방법률안 예고

예산사용의 효율성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러시아정부는 '정부민간파트너십에 관한 법률안'을 예고하였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와 법인(외국인투자자 포함)과의 계약을 통해 다양한 합작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와 조건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법률에 따르면 정부와의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완성된 대상물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에게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정부는 이러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러시아내 각종 민자사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상사소송법 약식재판 대상 확대

2012년 6월 25일 러시아상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약식재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법인의 경우 소송가액이 20,000 루블(약 700,000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300,000 루블(약 10,59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약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 약식재판의 대상을 6가지로 확대 및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구의 상당부분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 모스크바주 일부 도시 모스크바시로 편입

2012년 7월 1일부로 모스크바시의 공식면적이 현재보다 2.4배 확대됩니다. 공식적으로 모스크바인 구도 약 25만 명이 증가되어 117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지역은 모스크바시를 중심으로 서부, 남서부, 남부지역이 편입지역인데 이전 모스크바주에 소속되어 있던 21개 행정단위가 모스크바시로 편입되게 됩니다.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 (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 올림픽 인프라 구축 위한 조치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도 월드컵 이후 2년의 간격을 두고 곧바로 이어지게 된다. 양 대회 유치를 위해 43개월간의 마라톤을 성공적으로 마쳤던 브라질 정부가 숨 고르기를 지나치게 길게 한 때문인지 대회 개최를 위한 주경기장, 국제공항의 건설과 같은 기본적인 준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회 유치를 위해 2007년부터 계획했던 상파울루~리우데자네이루 연결 고속철도 사업이 복잡한 입찰 과정 등으로 인해 몇 년째 검토만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올림픽 이전인 2016년 완공을 포기하고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인프라 건설의 진행이 더딘 것은 브라질의 '국가입찰법'이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입찰법은 입찰 과정이 복잡해 입찰 기간이 장기화되고 관료제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많은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가입찰법의 문제점은 월드컵과 올림픽을 앞두고 경기장과 공항 건설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미진한 준비 상황에 대해 조바심을 느낀 브라질 의회는 2011년 6월 입찰 절차의 표준화·신속화를 목적으로 국가 입찰에 관한 새로운 법인 '특별국가입찰법'을 통과시켰다...(중략)

정철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 중남미팀장

- [제859호 한경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 (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6중고에 시달려 온 일본 기업, 첨단산업 중심으로 한국 진출 증가

최근 일본에서는 기업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 높은 법인세와 엔화 강세 등 이른바 '5중고(五重苦)'와 함께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력 공급 부족까지 가중돼 '6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내수 시장의 위축과 취약해진 공급망 등까지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제조업의 해외 현지 생산 비중은 2000년 15.9%에서 2010년 25.1%로 크게 늘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발표한 2011년도 '제조업 해외 직접투자 조사'에 따르면 해외에 생산 거점을 둔 제조업 603개사 중 해외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답한 기업은 87.2%로 전년 대비 4.4% 많았다...(중략)

강성 법무법인 지평지성 대표변호사, 일본팀장

- [제860호 한경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 (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일자리 2500만 개 창출...실현은 '글썸'

2012년 5월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 번째로 대통령에 취임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과 총리의 정치권력 교체가 다시 일어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인구정책 이행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 대외 정책 노선 이행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 교육 과학 분야 국가정책 이행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 장기 국가 경제정책에 관한 대통령령 등 다수의 대통령령을 공포했다. 이 중에서도 눈여겨볼만한 것이 바로 장기 국가 경제정책에 관한 대통령령(이하 장기 국가 경제정책)이다.

장기 국가 경제정책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성장의 속도 및 안정성 확보, 러시아 국민의 실질소득 증가, 러시아 경제의 기술적 선도 달성을 경제 부문에서의 국가 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정 과제를 제시했는데, ▷2020년까지 고생산성 일자리 2500만 개 창출 및 개선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5%, 2018년까지 27%로 투자 규모 증대 ▷고도 과학 기술 부문 제품의 GDP 비중을 2018년까지 2011년 수준 대비 1.3배로 증대 ▷노동생산성을 2018년까지 2011년 수준 대비 1.5배 향상 ▷세계은행의 러시아 기업 환경 평가(Doing Business) 순위를 2011년 120등에서 2015년 50등, 2018년 20등으로 향상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중략)

이승민 법무법인 지평지성 러시아변호사

- 제861호 한경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 (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호주] 대형 자원 기업 이익의 30% 세금 부과

호주는 300개 이상의 광산에서 20가지가 넘는 종류의 광물이 생산되는 실로 축복받은 자원의 나라다. 석탄 및 철광석은 수출량이 세계 1, 2위를 기록하고 있고 광물 이외의 주요 에너지 자원도 풍부한 매장량을 자랑한다. 우리나라는 연간 전체 철광석 및 석탄 수입량의 70%, 30%를 호주에 의존하고 있으며 호주로서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이어 3위 수출 대상국이기도 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전 세계 국제금융 시장이 경색되고 글로벌 경기가 침체됐던 시기에도 국제 원자재 시장의 활황으로 호주 경제가 입은 타격은 실로 미미했으며 호주 경제는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실질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Economic Outlook Report)'에 따르면 호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호주 경제는 향후 2년 동안 3%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중략)

임주영 법무법인 지평지성 호주변호사

- [제862호 한경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 (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금융 위기로 좌초...투자 환경은 유리

2006년부터 시작된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의 고공 행진은 2008년 금융 위기로 2년도 안 돼 꺾였는데, 3~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기업의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는 전무해 보인다. 게다가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좌초하고 있는 캄코시티 프로젝트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내에서는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진 것 같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선 캄보디아 정부는 2009년 12월 외국인이 공유건물(집합건물)의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인 공유건물 전유 부분 취득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유건물에 한해 건물의 70%까지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됐다...(중략)

유정훈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캄보디아 사무소장

- [제863호 한경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 (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라오스] 증권거래법 제정 등 활성화 꾀해

라오스 증권거래소는 2010년 10월 10일 라오스중앙은행과 한국거래소의 합작으로 설립됐다. 2011년 1월 11일 라오스국제상업은행과 라오스전력청 산하의 EDL-Gen이 최초로 상장되면서 라오스 증권거래소는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거래소 개장 초기에는 종합지수가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거래량이 저조해지면서 소강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라오스인들의 자본시장과 증권 거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라오스 정부는 해외 기관들과 협력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중략)

반기일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질랜드변호사, 라오스 사무소장

- [제864호 한경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